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경만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631
----------	------

발의연월일 : 2020. 8. 3.

발 의 자 : 김경만 · 박 정 · 양정숙
양정숙 · 이병훈 · 강선우
전재수 · 신정훈 · 민형배
양이원영 · 김홍걸 · 강병원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급업자와 대리점 간의 거래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을 규율함으로써 공정한 대리점거래의 질서를 확립하고자 제정되었음.

그런데 유사한 영역을 규제하고 있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경우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사업자단체를 조직하여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에 관한 협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이 법에서는 해당 규정이 없어 법률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음.

또한 현행법은 공급업자가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용역을 구입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및 경제상 이익 제공을 강요하는 행위에 대하여 3배의 범위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판매 목표를 강제하는 행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이에 징벌적 손해배상에 ‘판매목표 강제 행위’도 포함하여 불공정거래에 대한 대리점의 자기방

어권을 강화하고자 함.

본 개정안은 대리점의 단체 조직과 거래조건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되는 법 위반행위를 확대함으로
써 대리점거래의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
의2 신설, 제18조, 제23조, 제25조제1항, 제34조제2항)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대리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대리점은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이하 “대리점단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② 특정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대리점으로만 구성된 대리점단체는 그 공급업자에 대하여 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공급업자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대리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공급업자는 다수의 대리점으로 구성된 대리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하여 대리점단체는 대리점거래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공급업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급업자는 대리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대리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 중 “제5조부터 제12조”를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12
조”로 한다.

제23조 중 “제6조”를 “제5조의2제5항 및 제6조”로 한다.

제25조제1항 본문 중 “제6조”를 “제5조의2제5항 및 제6조”로 한다.

제34조제2항 중 “제6조 또는 제7조”를 “제6조부터 제8조까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손해배상 책임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2항의 규정은 이 법 시
행 이후 위반행위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신 설></u></p>	<p><u>제5조의2(대리점단체의 거래조건 변경 협의 등) ① 대리점은 권익보호 및 경제적 지위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단체(이하 “대리점단체”라 한다)를 구성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u></p> <p><u>② 특정 공급업자와 계약을 체결·유지하고 있는 대리점으로만 구성된 대리점단체는 그 공급업자에 대하여 계약의 변경 등 거래조건(이하 이 조에서 “거래조건”이라 한다)에 대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u></p> <p><u>③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 받은 경우 공급업자는 성실하게 협의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복수의 대리점단체가 협의를 요청할 경우 공급업자는 다수의 대리점으로 구성된 대리점단체와 우선적으로 협의한다.</u></p> <p><u>④ 제2항에 따른 협의와 관련</u></p>

하여 대리점단체는 대리점거래의 통일성이나 본질적 사항에 반하는 거래조건을 요구하는 행위, 공급업자의 경영 등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또는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공급업자는 대리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대리점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대리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아니할 것을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8조(협회의 조정사항) 협회는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분쟁당사자가 요청하는 사항으로서 제5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과 관련한 분쟁에 관한 사항을 조정한다.

제23조(시정조치)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제18조(협회의 조정사항) -----

-제5조, 제5조의2 및 제6조부터 제12조-----
-----.

제23조(시정조치) -----
---제5조의2제5항 및 제6조-----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25조(과징금) ① 공정거래위원회는 제6조부터 제12조까지를 위반하는 행위가 있을 때에는 해당 사업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 위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법 위반 금액을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등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생략)

제34조(손해배상 책임)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급업자가 제6조 또는 제7조의 불공정거래행위를 하여 대리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대리점에게 발생한 손해의 3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③·④ (생략)

-----.

제25조(과징금) ① -----

----제5조의2제5항 및 제6조----

-----.

-----.

② (현행과 같음)

제34조(손해배상 책임) ① (현행과 같음)

② -----

----제6조부터 제8조까지----

-----.

③·④ (현행과 같음)